

**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3874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3.

발 의 자 : 이연희 · 전용기 · 정준호  
김남희 · 안태준 · 문진석  
박상혁 · 이광희 · 한민수  
허종식 · 이정문 · 박정현  
의원(12인)

**제안이유**

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보다 나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,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,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급격한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.

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나,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통합심의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수행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항목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 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하여 함께 심의하는 사업의 절차 개선을 통해

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 
환경영향평가·소방 성능위주설계를 추가함(안 제33조).
- 나.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 
위한 위원회의 심의·평가를 거친 것으로 봄 (안 제34조).

#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”을 “사항(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에 한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2조에 따른 시·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등에 관한 사항(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)

10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

제33조제4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2조에 따라 시·도조례로 구성하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
13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평가단장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
제33조제6항제2호 중 “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”을 “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다.

3.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: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12호 및 제13호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 
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·심의 또한 거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3조(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<br>설치 등)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<br>획,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<br>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<br>복합사업계획(이하 “관련계획”이<br>라 한다)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<br>계획 · 건축 · 환경 · 교통 · 재해<br>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<br>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<br>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(이하 “통합<br>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| 제33조(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<br>설치 등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사항(제9호 및 제1<br>0호의 사항은 「장기공공임대주택<br>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 제<br>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<br>정비사업계획에 한한다)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1. ~ 8. (생략)<br>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8. (현행과 같음)<br>9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2조에<br>따른 시·도조례에 따른 환경영<br>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(같은 법<br>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<br>지의 사항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<br>한 법률」에 따른 성능위주설계<br>의 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9. · 10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,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,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1. ~ 11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⑤ (생 략)

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구

11. · 12. (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2조에 따라 시·도조례로 구성하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
13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평가단장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분에 따라 재적위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: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

<신설>

3. (생략)

⑦ ~ ⑨ (생략)

제34조(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) ①·② (생략)

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 <후단 신설>
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-----  
-----  
-----

3.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: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12호 및 제13호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⑦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이 경우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을 승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~ 8. (생략) | <u>인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·심의 또한 거친 것으로 본다.</u><br>1. ~ 8.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